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 2.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상임이사를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03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을 공단 비상임이사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하며, 상임이사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순위 구분 없이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상임이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으로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대만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68
	그 밖의 공급자	8.68
태국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7
	그 밖의 공급자	3.68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제이비에프(JBF RAK LL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 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교육부령 제156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유학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7호

●해양수산부령 제28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